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황정현
대한민국 06131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95길 29-13, 302

발송일 (일/월/년) 2019년 03월 14일 (14.03.2019)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18-KSY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8/010392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8년 09월 06일 (06.09.2018)

우선일 (일/월/년)
2017년 09월 06일 (06.09.2017)

국제특허분류(IPC)
B09B 3/00(2006.01)i, B65G 33/26(2006.01)i, B65G 33/10(2006.01)i

출원인
김수윤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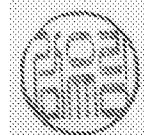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19년 03월 13일 (13.03.2019)

심사관
김유림
전화번호 +82-42-481-3516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a)).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2-4	있음
	청구항	1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없음	있음
	청구항	1-4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4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D1: JP 3124698 B2 (MORISHITA K.K.) 2001.01.15

D2: KR 20-0167022 Y1 (최돈수) 2000.01.15

D3: JP 3382875 B2 (KURIMOTO LTD.) 2003.03.04

* 본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는 청구항 제3항 내지 제4항이 청구항 제1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작성되었습니다.

2.1 신규성 및 진보성

2.1.1 청구항 제1항

인용문헌 D1에는 스크류 축(35)과, 스크류 축(35)의 외주연에 형성된 나선형태를 이루어 형성되고, 유기성 폐기물을 일방향으로 이송시키며 교반, 분쇄시키기 위한 나선형태의 스크류 날개(39)로 이루어지는 이송용 스크류(34); 및 공기를 공급해 호기성 미생물을 증식하기 쉽게 하고, 가스 및 수증기를 뽑기 쉽게 하고 유기 폐기물의 분해 효율을 높이는 스크류 날개(39)의 선단부로 1개 이상 형성되는 구멍(40)을 포함하는 유기 폐기물 처리장치용 이송 스크류(단락 [0003], [0005], [0022], [0035]; 청구항 2; 및 도면 3 참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항은 인용문헌 D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PCT 제33 (2) 및 (3)에 따른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습니다.

2.1.2 청구항 제2항

청구항 제2항의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스크류 날개 (39)의 외주면과 처리 용기(22)의 내주면으로 유기 폐기물을 파쇄 할 수 있는 구성(단락 [0049]; 및 도면 3 참조)과 인용문헌 D2에 기재된 음식물쓰레기가 용이하게 파쇄되도록 스크루날개(23)에 요철형상의 톱니부(24)가 다수 구비되는 구성(페이지 3; 및 도면 1 참조)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의 창작의 능력을 발휘하여 쉽게 채택할 수 있는 단순 설계 변경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2항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문헌 D1 및 D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PCT 제33(2)에 의한 신규성은 인정되나, PCT 제33(3)에 의한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2.1.3 청구항 제3항

추가 기재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청구항 제3항의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스크류 축(35)과, 스크류 축(35)의 외주면에 형성된 나선형태를 이루어 형성되고, 유기성 폐기물을 일방향으로 이송시키며 교반, 분쇄시키기 위한 나선형태의 스크류 날개(39)로 이루어지는 이송용 스크류(34)(단락 [0003], [0005], [0022]; 및 도면 3 참조)와 인용문헌 D3에 기재된 회전축(01)에 끼워지는 슬리브(06a)에는 스크류 날개(09)를 분할해 고정하며, 분할 날개(09a)는 단면이 맞대어 연결되는 구성(단락 [0004], [0006]-[0007]; 및 도면 15, 17 참조)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의 창작의 능력을 발휘하여 쉽게 채택할 수 있는 단순 설계 변경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3항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문헌 D1 및 D3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PCT 제33(2)에 의한 신규성은 인정되나, PCT 제33(3)에 의한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2.1.4 청구항 제4항

청구항 제4항의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이송용 스크류(34)의 중간부에 이송되는 유기 배기물을 되받아 치는 날개(69)가 여러 장 설치되는 구성과 대응합니다(단락 [0023]; 및 도면 3 참조). 따라서 청구항 제4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1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PCT 제33(2)에 의한 신규성은 인정되나, PCT 제33(3)에 의한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2.2 산업상 이용가능성

청구항 제1항 내지 제4항은 PCT 제33조(4)에 따라 산업상 이용 가능합니다.